

1. 개정이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등급 구분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나.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개편(안 별표 1)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의 한식당 경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 세부 평가 방법은 고시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해외 우수 한식당 표시방법 개편(안 별표 2)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급 도입에 따라 표시 방법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준”을 “기준 및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메뉴판”을 “식당 내·외부 사진 및 메뉴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등급을 정하여 해외 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제4조제1항 관련)”을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및 등급 (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

별표 1 제1호가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평가 기준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장실(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을 “화장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급은 제1호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한식당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우수등급 : 제2호에 따른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한식당
- 나. 추천등급 : 제2호에 따른 평가 점수가 65점 이상인 한식당

4. 세부 평가방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항목별 배점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2 중 “(제4조제5항 관련)”을 “(제4조제7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결합하여”를 “결합하고, 별표 1에 따른 해당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함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우수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한식당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업체	한식당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한식당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및 국적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E-mail)	전화번호	

「한식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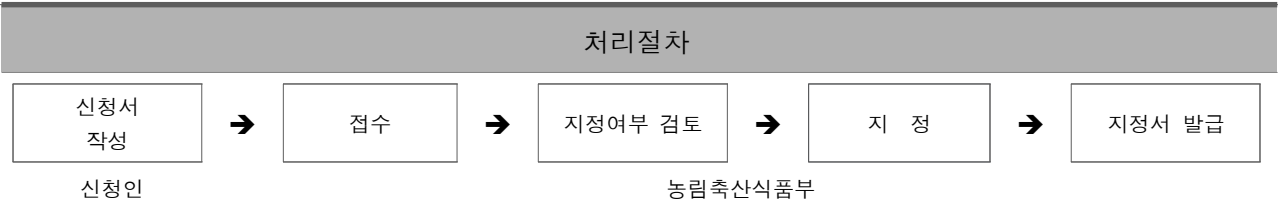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최근 1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식당 내·외부 사진 및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Excellent Korean Restaurant

Receipt Number		Date of Receipt	Period required for processing: 180 days
Restaurant	Restaurant name		Business Registration No.
	Restaurant Address		Tel.
Applicant	Representative's name and nationality		
	Email		Tel.

I hereby apply for designation as an Excellent Korean Restaurant, as specified above, in line with Article 15-1 of the Act on Korean Food Promotion and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Korean Food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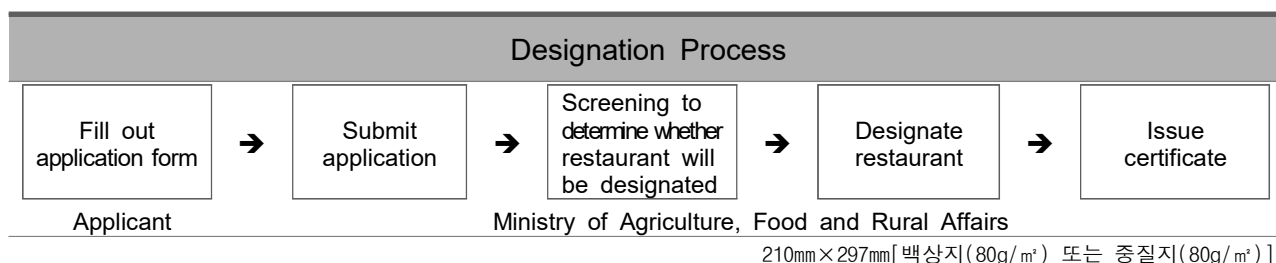
YY / MM / 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quired Documents	- One (1) copy of a document verifying that the restaurant is a registered business (business license, etc.) - Document(s) verifying that the applicant has operated a Korean restaurant for the past one year (in the respective country) - Employee list (including representative) (must include each employee/representative's nationality and level of Korean proficiency) - Document(s) verifying the chef's credentials and experience (must include whether he/she has completed Korean cuisine training) - Restaurant photos (interior and exterior) and menu (must include the name and a photo of each main dish) - Purchase/transaction statement for Korean food ingredients imported from Korea - Document(s) verifying that the restaurant satisfie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outlined in Att. Table 1	No processing fee
--------------------	---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한식당 주소	
지정 등급	
유효기간	

「한식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Certificate of Excellent/Selected Korean Restaurant

Certification No.	
Name of Restaurant	
Name of Representative	
Restaurant Address	
Designation Grade	
Period of Validity	

In line with Article 15 of the Act on Korean Food Promotion, the above restaurant is hereby certified as Excellent Korean Restaurant.

YY / MM / DD

Declared by (signature or stamp)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u>기준</u> 은 별표 1과 같다.	① ----- ----- <u>기준 및 등급</u> -----.	① ----- -----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u>지정신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u>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u> ----- -----.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최근 <u>3년간</u>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 <u>1년간</u> ----- ----- ---	2. --- <u>1년간</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u>메뉴판</u> (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u>식당 내·외부 사진 및 메뉴판</u> -----	5. <u>식당 내·외부 사진 및 메뉴판</u>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u>기준</u> 을 <u>갖춘 경우</u> 에는 <u>해외 우수 한식당</u> 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	③ ----- ----- ----- <u>갖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등급을 정하여 해외 우수</u> ----- -----	③ ----- ----- -----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제4
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
것

가.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
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나. (생 략)

다.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2.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에 대해 평
가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85점 이
상일 것

가. (생 략)

나.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

1)~4) (생 략)

5) 화장실(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

---.

④ 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
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
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
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및
등급(제4조제1항 관련)

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

가. 최근 1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
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1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2.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평가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

1)~4) (현행과 같음)

5) 화장실 및 세면대가 있어야

야 한다) 및 세면대가 있어야 하고, 휴지·비누 등의 물품이 잘 구비되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

다. (생략)

라. (생략)

3. 제2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신설>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 (제4조제5항 관련)

하고, 휴지·비누 등의 물품이 잘 구비되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급은 제1호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한식당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우수등급 : 제2호에 따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한식당

나. 추천등급 : 제2호에 따른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인 한식당

4. 세부 평가방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항목별 배점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 (제4조제7항 관련)

1.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 및 영문 글자를 결합하여 표시하되, 한식당 내·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나. (생략)

2. (생략)

1.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 및 영문 글자를 결합하고, 별표 1에 따른 해당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함께 표시하되, 한식당 내·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